의안 번호	24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5. 2.(금) 김도운 의원 외 9명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2.(금)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5. 14.(수)

2. 제안설명 요지(김도운 의원)

가.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민원의 정의를 준용하고 기존 훈령(「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민원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안 제5조2 신설 및 제4조제1항제3호 삭제)

❍ 민원 종류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명확화(안 제6조)

다. 근거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홍숙)

❍ 기존 규정과 조례 간 상충되는 조문 정비(진정 민원처리기간)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6호: 30일 이내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14일 이내

→ 규정 폐지 및 조례에 내용 반영(14일 이내)

❍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과 중복·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치법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 · 훈령 · 예규 · 고시 · 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 허가 · 승인 · 특허 ·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 대장 등에 등록 ·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 · 제도 ·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 ·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